

19. 감사 의 건 서

농협법 제71조 제1항 및 제3항, 정관 제13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2018년 1월 8일에 조합장으로부터 제출된 제57기 2017년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의 각 사항에 대하여 2018년 1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감사한 결과 그 내용을 인정함.

2018년 1월 12일

와 부 농 업 협 동 조 합

감 사 주 재 동 (인)

감 사 박 근 순 (인)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와부농업협동조합

조합원 및 이사회 귀중

2018년 1월 23일

우리는 별첨된 와부농업협동조합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17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과 그 밖의 설명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경영진은 농업협동조합법과 농업협동조합 회계규정 및 회계업무방법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수행한 감사를 근거로 해당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며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의 금액과 공시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절차의 수행을 포함합니다. 절차의 선택은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에 대한 평가 등 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인은 이러한 위험을 평가할 때,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및 공정한 표시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고려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또한 재무제표의 전반적 표시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

출한 회계추정치의 합리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감사의견

우리의 의견으로는 조합의 재무제표는 와부농업협동조합의 2017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농업협동조합법과 농업협동조합 회계규정 및 회계업무방법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강조사항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이용자는 주식 19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 19에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조합은 특수관계자인 농협중앙회와 자금거래로서 대내예치금 112,655백만원, 계통출자금 8,923백만원, 차입금 1,76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당기 중 동 자금거래로 인한 이자수익, 배당금 및 이자비용이 각각 2,413백만원, 107백만원, 31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타사항

와부농업협동조합의 2016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는 감사받지 아니한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31길 8(논현동) 노벨2빌딩 6층

삼영회계법인
대표이사 김덕아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조합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